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35
----------	------

2016. 4. 2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6. 4. 19. 김미경 의원 외 14인 발의 (2016. 4. 20. 회부)

2. 제안이유

- 노인과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55조의2제4항에서 주
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해
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
시 주택 조례」에 명시된 주민공동시설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각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
동시설의 유형으로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의4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시 ‘주민공동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19일 김미경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현재 서울시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¹⁾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해당 시설의 공급부족과 수급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주택법」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시 설치할 수 있는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이해됨.
- 현행법상 ‘주민공공시설’은 「주택법」 위임에 따라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제2조제4호)하고, 경로당 등 총 13개의 세부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

1) 서울시는 3년 뒤인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10년 후인 2026년에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속도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자료: 서울시, 2013-2033년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같은 규정 제2조제3호파목에서는 「공동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고,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된다 하겠음.
 - 참고로, 「주택법」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는 광의의 공동시설로 '복리시설'을 규정²⁾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필수 주민공동시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주민공동시설'의 총면적(제1항)과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 설치해야 할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제3항)를 규정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설치해야 할 '주민공동시설'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필수 '주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서는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정의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에 '노유자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복리시설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는 주택법령상 최광의의 공동시설로 파악됨.

민공동시설'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의 경우 특별한 법률적 쟁점사항은 없겠음.

- 다만, 집행부 의견에서 제시된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면, 제시된 의견과 같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시설만을 선택적으로 필수 '주민공동시설'에 추가할 경우, 자칫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도외시하고 해당시설 설치에만 국한된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선택적 확충보다는 본 개정안의 전면적 확충이 보다 실효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시설수요에 입각하여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주택단지내 설치해야 할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유형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안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한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서상 지역 주민이 해당시설의 설치를 반대할 수도 있으며, 해당 복지시설의 세부유형과 시설기준 및 운영방식 등은 관계법령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필수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킴에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신중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 총 6개의 세부시설로 구성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총 6개의 세부시설로 구분됨.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재 서울시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총 5,51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2014.7월 서울시 집계 자료), 이중 60% 가량을 경로당(노인복지시설)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행정계획 수립³⁾시 특정시설에 편중된 시설설치로 인해 타 시설의 공급제약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관련 행정계획으로는 ‘2020년 고령사회 마스터플랜’(‘10년 수립, 비법정계획),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12년 수립, 비법정 계획),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계획’(‘12년 수립, 비법정계획) ‘14년 서울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14년 수립, 법정계획),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12년 수립, 비법정계획),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4년 수립, 법정계획) 등이 있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현황: 2014.7월 서울시 집계>

계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자활지원 시설	정신보건 시설
5,515	96	4,835*	530	84	89

* 참고: 사회복지시설 현황표상 노인복지시설(총 4,835개소)에는 장사시설(15개소) 및 기타시설(88개소)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해당시설 총수(4,732개소)와 차이를 보임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설치현황: 2014.7월 서울시 집계>

계	주거 복지시설	의료 복지시설	여가 복지시설	재가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4,732	28	510	3,720	472	2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전체현황: 2014.7월 서울시 집계>

구 분	계	주거 복지시설				의료 복지시설		여가 복지시설					재가 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양로원		어르 신 공동 생활 가정	복지 주택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노인 종합 복지 관	소규 모 노인 복지 센터	경 로 당	노인 교실	노인 대학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재가 어르 신 지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무로	일반															
계	4,732	5	8	5	10	166	344	32	43	3,258	361	26	210	46	28	111	77	2
시립	55	2	-	-	-	10	-	19	-	-	-	-	22	1	-	-	1	-
구립	1,179	-	-	-	-	20	4	12	43	967	8	26	97	-	1	-	1	-
사립	3,498	3	8	5	10	136	340	1	-	2,291	353	-	91	45	27	111	75	2
입소대상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자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 60세 이상 경로당: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

-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요와 관련하여 서울시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의 3.88%인 403,435명에 달하며, 이는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서울시 인구감소와 함께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

설과 달리 ‘만성적 공급부족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확충을 위한 본 조례안은 정책적 시의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됨.

<서울시 등록 장애인 현황: ‘13년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장애인등록	346,275	368,955	401,683	414,522	411,570	407,528	403,435
서울시인구	10,421,782	10,456,034	10,464,051	10,575,447	10,528,774	10,442,426	10,388,055
장애인비율	3.32%	3.52%	3.84%	3.92%	3.91%	3.90%	3.88%

※ 전체 장애인의 90%는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얻게 되는 것으로 집계됨
 (참고: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4.3)

- 금번 제267회 임시회에는 본 조례 개정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7)이 동일한 입법취지에서 동시 상정되었고, 이 조례안의 경우 정비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에 관계법령상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조례안이 동시 개정될 경우 정비사업구역 및 주택건설사업 단지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를 유도·권장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p> <p>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신 설〉</p>	<p>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단,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p>

[별 첨]

<주택법>

제2조(정의)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3.11.29.>
2. 삭제 <1999.9.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경로당
 - 나. 어린이놀이터
 - 다. 어린이집
 - 라. 주민운동시설
 -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 사. 청소년 수련시설
 - 아. 주민휴게시설
 - 자. 독서실
 - 차. 입주자집회소
 - 카. 공용취사장
 - 타. 공용세탁실
 -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 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6항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 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신설 2014.1.9)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300 ~ 500세대 미만 : 155㎡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225㎡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375㎡이상
	- 1,500세대 이상 : 500㎡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세대 이상 : 725㎡이상
작은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세대 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